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”



보 도 자 료

“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파트너”

- ▶ 보도일시: 2012.4.25(수) 조간,
<인터넷 4.24(화) 12:00 이후>
▶ 총 5쪽(참고자료 포함)

❖ 복지지원부장 김 현 길
차장 심 희 선
☎ 02-2670-0543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kcomwel.or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2012년도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주 설명회 개최

□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신영철)은 퇴직연금, 선택적복지 등의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각 기업에서 쉽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「선진기업복지제도* 도입지원 사업주 설명회」를 실시한다.

*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 : 선택적복지,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, 우리사주,

사내근로복지기금, 퇴직연금

<선진기업복지 지역별 설명회 일정>

권역	개최 일시	장 소	문의
서울	5.24(목) 14시	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대회의실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)	02-2230-9477
부산	4.27(금) 14시	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8층 대강당(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)	051-661-0185
대구	5. 3(목) 14시	대구산재병원 대강당 (대구 북구 학정로 515)	053-601-7303
경인	5. 9(수) 14시	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17층 대강당(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6)	032-451-9798
광주	5. 3(목) 13시	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(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)	062-608-0385
대전	4.27(금) 14시	둔산 사학연금회관빌딩 2층 회의장(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)	042-870-9241

※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-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설명회는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완화와 양질의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'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.
 - 올해는 설명회 참가대상을 기존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에서 500명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설명회 현장에서 기업환경에 적합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설계 등 기본컨설팅을 바로 제공한다.
- 금년도 사업주 설명회는 공단의 전국 6개 지역본부(서울·부산·대구·경인·광주·대전)별로 기업복지전문가를 확보, '선진기업복지지원단'을 구성하여 각 기업의 CEO에게 선진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, 도입효과, 표준 도입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매뉴얼도 제공한다.
-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신영철)은 「이번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 설명회는 양질의 다양한 선진기업복지제도를 기업에 소개하고 기본·심화 등 단계별 컨설팅과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, 각 기업이 노사 상생의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」라고 밝혔다.
-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는 연말까지 6개 권역별로 수시로 개최되며,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net)에서 권역별 개최 일정과 개최장소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심희선 차장(☎ 02-2670-0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☐ **사업개요** :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이 선진 기업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·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 설명회, 현장컨설팅(기본/심화) 및 온라인상담서비스를 무상 제공
- ☐ **지원규모** : 2,053개사(예산 9억원)
* 전년도 실적 : 2,195개사 컨설팅(402개사 도입), 18회 설명회 개최
- ☐ **지원대상** :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
- ☐ **지원내용**
-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사업주 설명회 : 전국 6개 권역(서울·부산·대구·경인·광주·대전)별 선진기업복지지원단에서 사업주(인사·노무 및 기업복지 담당)를 대상으로 선진 기업복지 사업주 설명회 개최
 - 무료 현장컨설팅 : 사업장에서 「소규모그룹 기본컨설팅」과 「심화컨설팅」 구분 신청 → 전문 컨설턴트들이 선진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, 제도 설계, 운영기법 등 선진기업복지 도입을 위한 컨설팅 실시
 - * 선진기업복지제도 : 이미 미국과 일본, 유럽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고효율의 기업복지제도로써 선택적복지,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, 우리사주제도, 사내근로복지기금, 퇴직연금을 총칭함
 - 온라인 후속상담 : 기본 및 심화 컨설팅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이나 후속상담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넷 또는 전화로 AS하는 온라인 서비스
- ☐ **사업주 설명회 및 컨설팅 신청·접수** : 2012. 4~12월(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- 근로복지포털(근로복지넷 www.workdream.net)에 기업회원(기업) 가입 → 기업복지컨설팅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
 - * 2011년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팅 수혜사업장은 심화컨설팅만 가능
 -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「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 사업주 설명회」 참석사업장은 사전에 온라인 신청 필요(서면 접수는 가급적 배제)
- ☐ **문의처**
- 근로복지공단(복지지원부) : 02-2670-0407 / 고용노동부(근로복지과) : 02-2110-7413

▪ 서울(강원)지원단 02-2230-9477	▪ 경인지원단 032-451-9703
▪ 부산(경남)지원단 051-661-0185	▪ 광주(전라) 062-608-0385
▪ 대구(경북)지원단 053-601-7303	▪ 대전(충청) 042-870-9241
 -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 참조

1 선택적복지

- 제도 개요 : 기업이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의 참여가 존중되는 기업복지 제도
- *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미국에서 1963년 Nealey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후 1990년대부터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널리 활성화되고 있음

□ 주요 내용

- 선택적복지지원은 사업주가 사내 복지예산의 일정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배분하고, 근로자는 그 금액 내에서 필요한 복지 구매
- 선택적 복리후생의 메뉴구성은 보통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지고, 기업별 특성에 따라 메뉴구성의 내용은 차이가 있음

2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
□ 제도 개요

- 근로자의 직장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악화로 생산성 저하 및 재해 증가, EAP 도입·운영으로 근로자의 고충 해결과 인적자원의 손실 방지
- * EAP(Employee Assistance Program)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문제를 지닌 근로자에게 상담, 컨설팅, 코칭,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
- * 1930년대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약물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,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알코올 문제 뿐만 아니라 직무 전반, 개인 정서, 가족 문제 등 직무몰입을 방해하는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발전

□ EAP 효과

-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감소, 직장가 가정의 양립 등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
- 근로자 이직률 감소, 노사화합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
- * EAP는 일반 근로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, 비정규직의 애로 완화수단, 산재예방이나 산재장애인의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 수단으로 활용 가능

3 우리사주

- 제도 개요 :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세제혜택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참여, 노사협력 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제도

- * 1968년 「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상증자 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우선배정으로 도입
- *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 : 설립준비위 구성→설립협의→규약작성→창립총회→우리사주 관리 위탁계약→설립 신고

□ 주요 내용

- 우리사주 취득 : 조합원 출연 또는 회사·주주의 무상출연 등
- 세제 지원
 - 근로자의 출연금(연간 400만원 한도) 및 배당소득세(액면가액 1,800만원 한도)에 대한 소득세 감면
 - 자사주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(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%, 4년 이상은 75% 비과세)
 - 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한 손비 인정

4 사내근로복지기금

□ 제도 개요 :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경영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과 노사협력 도모

- * 1983년 「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·운영 준칙」(노동부지침)을 제정·시행
- * 1991년 동 제도를 법제화, 1992년부터 시행

□ 주요 내용

- 기금조성 :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5/100 기준 임의출연
- 수혜대상 : 사내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자
- 기금사업 내용 :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(대부), 생활안정자금 대부, 장학금, 재난구호금, 체육·문화활동 및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사업

5 퇴직연금

□ 제도 개요 :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,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임

□ 주요 내용
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 : Defined Benefit) :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, 기업이 퇴직급여(월 평균임금 × 근속년수)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,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는 제도임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 : Defined Contribution) :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,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,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자산(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)을 적립해주고,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됨
- 개인퇴직계좌(IRA :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) :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·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,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